



국 토 교 통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통계를 활용한 보상금 산정시스템 활용 안내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계를 활용하여 사업시행자가 직접 보상금을 산정하는 경우, 많은 검색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복잡한 산정방법 등으로 인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됨을 물론, 업무미숙으로 인한 산정오류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2.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와 관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우리부에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통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운영할 예정이오니 관련업무 수행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통합프로그램 개요.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방위사업청장,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문화재청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서울지방항공청장, 부산지방항공청장, 해양경찰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서울특별시교육감, 부산광역시교육감, 대구광역시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감, 광주광역시교육감, 대전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감, 경기도교육감, 강원도교육감, 충청북도교육감, 전라남도교육감, 충청남도교육감, 전라북도교육감, 경상북도교육감, 경상남도교육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한국도로공사사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한국철도공사 사장,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한국전력공사 사장, 한국석유공사 사장, 한국관광공사사장,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부산항만공사사장, 울산항만공사사장, 인천항만공사사장,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대한석탄공사 사장, 한국공항공사 사장,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사무관대우 **홍정배** 행정사무관 **송영환** 과장 전결 2013. 9. 30. **김명운**

협조자

시행 토지정책과-3466 (2013. 9. 30.) 접수 보상과-8332 (2013. 9. 30.)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6동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406 팩스번호 044-201-5534 / 1sthong@molit.go.kr / 비공개(5)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통계를 활용한 보상액 산정 프로그램 개요

□ 배 경

-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직접 산정 가능
 - 이에 따라 농업손실, 주거이전비 등 통계를 활용하여 보상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 별도 감정평가 없이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
- 그러나 통계를 활용하여 보상액 산정 시 해당 통계 검색과정과 산정방식 등이 복잡하고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산정 오류 발생 가능성이 크고, 이를 둘러싼 관련 민원 발생 요인 상존
 - ☞ 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문제 해소와 업무 효율성 제고 필요

□ 통합 프로그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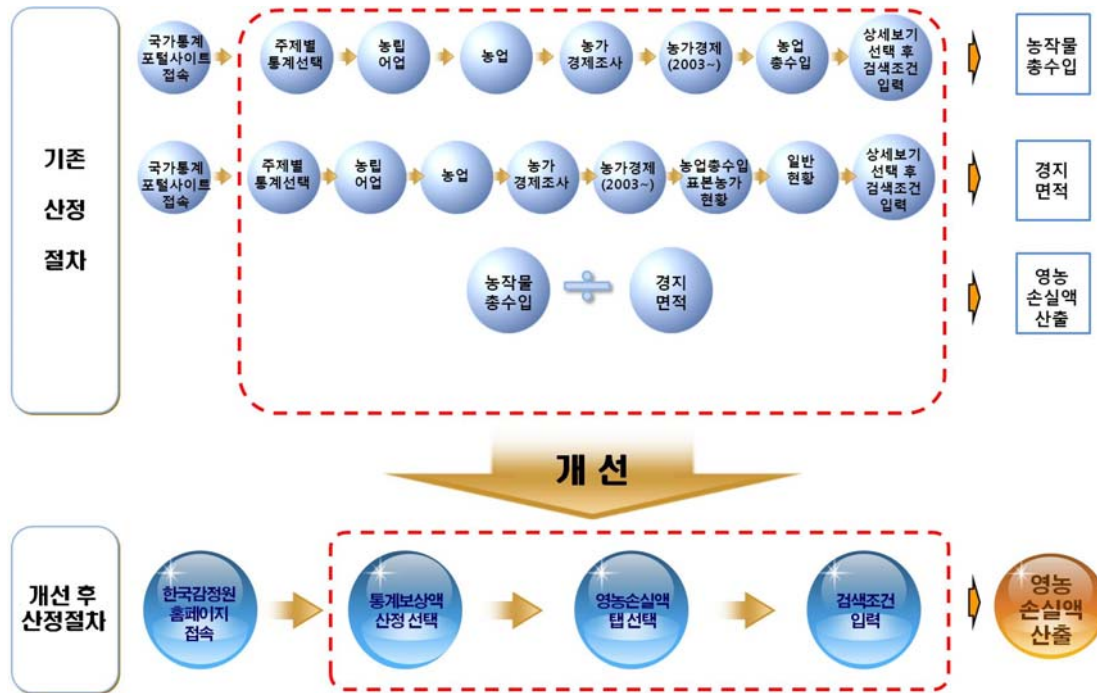
- 운영 주체 : 한국감정원
 - 한국감정원 홈페이지(<http://www.kab.co.kr>)를 통한 정보 제공
- 제공 통계
 - ①농업손실보상, ②주거이전비, ③이사비 중 노임, ④폐업보상규정 중 개인의 연간 영업이익 하한액, ⑤휴업보상규정 중 개인의 연간 영업이익 하한액, ⑥무허가영업보상 특례 중 영업손실 보상금, ⑦이농·이어민의 최저보상액 기준
- 기타 : 분기별, 연도별 발표 통계를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현행화

※ '13.10.01부터 '13.10.06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13.10.07 정식 운영 계획

- 시범기간은 http://www.kab.co.kr/kab/home/business/statistics_guide.jsp로 제공

□ 프로그램 운영 예시 (농업손실 보상)

○ 개선 전·후 비교



○ 시스템 운영 화면

영농손실(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연번	보상 대상	조항	내용	비고(기준)
1	농업의 손실보상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총수입 x 2년	농가경제조사통계

·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총수입] - [표본농가경지면적]

· 산정기준: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도별 농작물수입을 도별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

산정액 계산

연도: 2000년
지역(도): 경기도(서울·인천)

산출액: (농작물총수입 (A) [단위: 원/년] / 표본농가경지면적 (B) [단위: m²]) x 2년 = 산정액 [단위: 원/m²]

본 시스템은 관련통계자료수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문명되는 참고자료이므로, 실제 보상금산정 및 집행시에는 관련법령과 원본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책임자(장): 통계평가부 부장 윤득신 k24211@kab.co.kr

①농업손실액, ②주거이전비, ③이사비 중 노임, ④폐업보상규정 중 개인의 연간 영업이익 하한액, ⑤휴업보상규정 중 개인의 연간 영업이익 하한액, ⑥무허가영업보상 특례 중 영업손실 보상금, ⑦이농·이어민의 최저보상액 기준